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6년 4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위생과장 김용수)

□ 제안이유

-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도 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설치 목적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성목표 금액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사업, 식품위생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지원 및 기금관리·운용 소요 경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6조)
-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함.(안 제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조례안을 보면 10억원 기금조성 한도액을 삭제하여 기금 조성액 30% 범위내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타 기금의 경우 기금목표액을 정하여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문제는 없는지?</p> <p>○ 사용하고 남은 기 조성된 기금은 어떻게 되는지?</p>	<p>○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기금조성방법에 차이가 있고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p> <p>○ 기금으로 계속 누적하여 적립 됨.</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08호
의결 년월일	2006. 4. 19. (제126회)

제출년월일 : 2006. 4. 5.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도 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설치 목적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성목표 금액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 나.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사업, 식품위생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지원 및 기금관리·운용 소요 경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6조)
- 다.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함.(안 제8조)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영업자”를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 제2호중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8조제3항중 “부시장”을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당연직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을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2조제1호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각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부천시 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고, 제13조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생략) ② 기금은 10억원까지 조성한다. ③ (생략)	제3조(기금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 용한다. 1. <u>영업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u> 2.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에 대한 활동 지원</u> 3. ~ 6.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6조(기금의 용도) ----- <u>각 호의 어느 하나 -----</u> ----- 1. <u>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u> 2. ----- <u>홍보사 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u> 3. ~ 6. (현행과 같음) 7. <u>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u> 8. <u>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 는 소요경비</u>
제8조(기금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u>부시장</u> 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8조(기금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u> -----.

현행	개정안
<p>④ <u>당연직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1. ~ 4. (생략)</p> <p>⑤·⑥ (생략)</p>	<p>④ <u>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